

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규정(4-2-11)

제 4 장 재 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본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라 칭하며,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다문화사회를 맞아 외국인 유학생, 외국인 근로자,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, 지원활동 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.

1. 사회통합 관련 연구 모임 및 논문 발표
2.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모임 및 논문 발표
3.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교육 및 활동 지원
4.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
5. 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직) 연구소에는 자문위원회, 연구소장, 연구실장, 간사를 둔다.

제5조(임원 및 임기) ①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소무를 총괄한다.

- ② 연구실장은 연구소 사업의 기획 및 재정관리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자문위원회

제6조(자문위원) ① 연구소에는 운영 및 활동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위원은 사회통합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- ③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사업 수탁금 중 운영비, 연구용역 수탁금,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8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